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6.

발의자 : 이종배 · 박순자 · 김광림
곽대훈 · 추경호 · 홍일표
김순례 · 전희경 · 홍철호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9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 중 “4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별 칙) 제46조를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400</u> <u>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59조(별 칙) ----- ----- <u>2천</u> <u>만원</u> -----.